

예산총칙

2018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409,556,271 | 12,286,688 |
| 일반회계 | 388,221,940 | 11,646,658 |
| 특별회계 | 21,334,331 | 640,030 |
| 기타특별회계 | 21,334,331 | 640,030 |
| 상수도특별회계 | 8,479,547 | 254,386 |
| 자활기금특별회계 | 905,815 | 27,174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887,342 | 26,620 |
|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| 5,578,066 | 167,342 |
|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| 69,542 | 2,086 |
|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| 341,192 | 10,236 |
|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| 5,072,827 | 152,185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,758,532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7억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- (2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
- (3) 재해대책 및 복구비
- (4)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

제 6 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회계년도 중 내시된 교부세, 보조금,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